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84
----------	-------

발의연월일 : 2025. 12. 31.

발 의 자 : 박정하 · 박상웅 · 고동진
윤한홍 · 김도읍 · 김위상
김태호 · 김 건 · 김승수
김형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 중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경기 도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응급의료 인력 등이 확보되지 않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고는 현행법상 응급의료 인력 등을 확보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이 없어 비롯된 측면이 있음.

이에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대규모

행사 개최 시 행사 규모, 성격 및 사고 위험도 등에 상응하는 수준의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의무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대규모 행사 참가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 및 제62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3 중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하여야”를 “행사 규모, 성격 및 사고 위험도 등에 상응하는 수준의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도록”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4조의3을 위반하여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의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응급환자의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u>	제54조의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 ----- ----- ----- ----- ----- ---- <u>행사 규모, 성격 및 사고 위험도 등에 상응하는 수준의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도록</u> -----.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 7. (생략) ② · ③ (생략)	제62조(과태료)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54조의3을 위반하여 <u>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한 자</u> 6.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